|  |  |  |
| --- | --- | --- |
|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253호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를 1998년 11월 18일의 국무원 제10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발표하여 시행한다.  총리 朱鎔基  1998년 11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건설프로젝트의 신규 오염과 생태환경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 내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설프로젝트의 건설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오염이 생기는 건설프로젝트를 건설 시에는 마땅히 오염물 배출에 대한 국가표준과 지방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점 오염물 배출총량 통제를 실시하는 구역 내인 경우에는 중점 오염물 배출총량 통제에 대한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조** 공업 건설프로젝트는 에너지소모가 적고 오염물 배출량이 적은 청정 생산 공정을 사용하고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5조** 개축, 확장 프로젝트와 기술개조 프로젝트는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그 프로젝트와 관련되는 기존 환경오염과 생태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  **제6조** 국가는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한다.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업무는 상응한 자격증서를 취득한 단위가 실시한다.  **제7조** 국가는 환경에 대한 건설프로젝트의 영향에 따라 아래의 규정에 근거하여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에 대한 분류별 관리를 실시한다.  (1) 건설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고 건설프로젝트로 생기는 오염과 환경 영향에 대한 전면적이고 상세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건설프로젝트가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보고표를 작성하고 건설프로젝트로 생기는 오염과 환경 영향에 대한 분석 또는 전문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프로젝트의 환경 영향이 아주 적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등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분류별 관리명부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8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프로젝트의 개요  (2) 건설프로젝트 주변 환경현황  (3) 환경에 가져올 수 있는 건설프로젝트의 영향 분석과 예측  (4) 환경보호 조치 및 경제적, 기술적 논증  (5) 환경영향의 경제손익분석  (6)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실시건의  (7) 환경영향평가 결론.  수토 유지와 관련되는 건설프로젝트는 수 행정주관부서의 심사 동의를 얻은 수토유지 방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표, 환경영향등기표의 내용과 서식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한다.  **제9조** 건설단위는 건설프로젝트 타당성 연구단계에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의 심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철도, 교통 등 건설프로젝트는 심사 허가권한이 있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동의를 얻고 초보적 설계를 완성하기 전에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의 심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타당성연구가 불필요한 건설프로젝트는 건설단위가 건설프로젝트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의 심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중 영업집조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건설단위는 영업집조 수속을 처리하기 전에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의 심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는 건설단위가 심사 허가권한이 있는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건설프로젝트의 업계 주관부서가 있는 경우 그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는 업계 주관부서의 초보적인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 허가권한이 있는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해안공사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는 해양행정주관부서가 심사하고 의견을 밝힌 후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허가를 얻어야 한다.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환경영향보고표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환경영향등기표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각각 심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건설단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의 예비심사, 심사 및 허가는 그 어떠한 비용도 수취할 수 없다.  **제11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아래의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의 심사 허가를 처리한다.  (1) 핵시설, 절대적 기밀공사 등 특수 성격의 건설프로젝트  (2)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을 벗어난 건설프로젝트  (3) 국무원이 심사 허가하거나 또는 국무원이 유관부서에 심사 허가를 위임한 건설프로젝트.  전항 규정 이외의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의 심사 허가권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건설프로젝트가 행정구역을 벗어난 환경영향을 빚어내어 유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환경영향 평가결론에 분쟁이 있는 경우 그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는 그의 공동한 직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심사 허가한다.  **제12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가 허가를 얻은 후 건설프로젝트의 성격, 규모, 지점 또는 채용한 생산 공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건설단위는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의 심사 허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가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후 건설프로젝트 건설에 착공한 경우 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는 원 심사 허가기관에 심사 허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원 심사 허가기관은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심사의견을 서면으로 건설단위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에 통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국가는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에 대한 자격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발급한 자격증서를 취득하고 자격증서가 규정한 등급과 범위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그 평가결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자격증서를 수령하고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를 정기적으로 공포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다.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요금기준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 건설단위는 공개 입찰 방식을 통하여 환경영향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를 선정하여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를 맡길 수 있다.  어떠한 행정기관도 건설단위에 환경영향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를 지정하여 환경영향 평가를 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 건설단위가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 시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소재지 유관단위와 거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보호시설의 건설**  **제16조** 건설프로젝트에 부대 건설이 필요한 환경보호시설은 주체 공사와 함께 동시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사용에 투입되어야 한다.  **제17조** 건설프로젝트의 초보적 설계는 환경보호 설계규범의 요구에 따라 환경보호 편이나 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아울러 허가를 얻은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에 근거하여 환경보호 편이나 장에서 환경오염 및 생태환경파괴 방지 조치, 그리고 환경보소시설 투자예산을 관철하여야 한다.  **제18조** 건설프로젝트의 주체공사가 완공된 후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그의 필요로 건설한 환경보호시설은 반드시 주체 공사와 동시에 시운전에 투입되어야 한다.  **제19조** 건설프로젝트 시운전 기간에 건설단위는 환경보호시설의 운행상황과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건설프로젝트가 준공된 후 건설단위는 당해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를 심사 허가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당해 건설프로젝트의 부대시설로 건설한 환경보호시설의 준공 검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보호시설 준공검수는 주체 공사의 준공검수와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운전이 필요한 건설프로젝트는 건설단위가 건설프로젝트가 시운전에 투입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당해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를 심사 허가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당해 건설프로젝트의 부대시설로 건설한 환경보호시설의 준공 검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 단계별로 건설하고 단계별로 생산, 사용에 투입하는 건설프로젝트의 상응한 환경보호시설은 단계별로 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환경보호시설 준공검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3조** 건설프로젝트의 부대시설로 건설한 환경보호시설이 검수에 합격되어야 당해 건설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생산, 사용에 투입될 수 있다.  **제4장 법적 책임**  **제24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의 심사 허가를 감당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수속보완을 명하며, 기간이 지나도 보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건설을 중지시키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의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건설프로젝트의 성격, 규모, 지점 또는 사용한 생산 공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도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형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의 허가를 다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가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후에 건설프로젝트 건설에 착공하고 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를 원 심사 허가기관에 보고하여 재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25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가 허가를 얻지 아니하거나 또는 원 심사 허가기관의 재심사 및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스스로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 심사 허가를 감당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그 건설을 중지시키고 기한부 원상복구를 명하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6조**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시운전 건설프로젝트와 함께 건설한 환경보호시설이 주체 공사와 동시에 시운전에 투입되지 못한 경우 당해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를 심사 허가한 환경행정 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운전 중지를 명하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7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설프로젝트가 시운전에 투입되어 3개월을 초과하고도 그 건설단위가 환경보호시설의 준공검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의 심사 허가를 감당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환경보호시설 준공검수 수속을 기한부 처리하도록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운전 중지를 명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설프로젝트의 부대시설로 건설하는 환경보호시설이 완공되지 않았거나 검수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검수에 불합격임에도 불구하고 주체 공사가 정식 생산에 투입되거나 사용에 교부된 경우 당해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의 심사 허가를 감당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생산 또는 사용 중지를 명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단위가 환경영향 평가업무를 처리할 때 허위를 날조한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그 자격증서를 회수 말소하고 아울러 그 수취 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0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업무직원이 부정을 행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 처벌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가한다.  **제5장 부 칙**  **제31조** 유역 개발, 개발구 건설, 도시 신구 건설 및 노후 지역의 개축 등 지역성 개발을 위한 건설계획을 편성 시에는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규정한다.  **제32조** 해양석유 탐사개발 건설프로젝트의 환경보호 관리는 해양석유 탐사개발 환경보호 관리에 대한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3조** 군사시설 건설프로젝트의 환경보호 관리는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4조** 이 조례는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53号  　　《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已经1998年11月18日国务院第10次常务会议通过，现予发布施行。  　　总理　朱镕基  　1998年11月29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防止建设项目产生新的污染、破坏生态环境，制定本条例。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和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内建设对环境有影响的建设项目，适用本条例。  **第三条**　建设产生污染的建设项目，必须遵守污染物排放的国家标准和地方标准；在实施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的区域内，还必须符合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的要求。  **第四条**　工业建设项目应当采用能耗物耗小、污染物产生量少的清洁生产工艺，合理利用自然资源，防止环境污染和生态破坏。  **第五条**　改建、扩建项目和技术改造项目必须采取措施，治理与该项目有关的原有环境污染和生态破坏。  **第二章　环境影响评价**  **第六条**　国家实行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制度。 建设项目的环境影响评价工作，由取得相应资格证书的单位承担。  **第七条**　国家根据建设项目对环境的影响程度，按照下列规定对建设项目的环境保护实行分类管理：  （一）建设项目对环境可能造成重大影响的，应当编制环境影响报告书，对建设项目产生的污染和对环境的影响进行全面、详细的评价；  （二）建设项目对环境可能造成轻度影响的，应当编制环境影响报告表，对建设项目产生的污染和对环境的影响进行分析或者专项评价；  （三）建设项目对环境影响很小，不需要进行环境影响评价的，应当填报环境影响登记表。  建设项目环境保护分类管理名录，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制订并公布。  **第八条**　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应当包括下列内容：  （一）建设项目概况；  （二）建设项目周围环境现状；  （三）建设项目对环境可能造成影响的分析和预测；  （四）环境保护措施及其经济、技术论证；  （五）环境影响经济损益分析；  （六）对建设项目实施环境监测的建议；  （七）环境影响评价结论。  涉及水土保持的建设项目，还必须有经水行政主管部门审查同意的水土保持方案。  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表、环境影响登记表的内容和格式，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规定。  **第九条**　建设单位应当在建设项目可行性研究阶段报批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环境影响登记表；但是，铁路、交通等建设项目，经有审批权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同意，可以在初步设计完成前报批环境影响报告书或者环境影响报告表。  按照国家有关规定，不需要进行可行性研究的建设项目，建设单位应当在建设项目开工前报批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环境影响登记表；其中，需要办理营业执照的，建设单位应当在办理营业执照前报批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环境影响登记表。  **第十条**　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环境影响登记表，由建设单位报有审批权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审批；建设项目有行业主管部门的，其环境影响报告书或者环境影响报告表应当经行业主管部门预审后，报有审批权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审批。  海岸工程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或者环境影响报告表，经海洋行政主管部门审核并签署意见后，报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审批。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之日起６０日内、收到环境影响报告表之日起３０日内、收到环境影响登记表之日起１５日内，分别作出审批决定并书面通知建设单位。  预审、审核、审批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环境影响登记表，不得收取任何费用。  **第十一条**　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负责审批下列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环境影响登记表：  （一）核设施、绝密工程等特殊性质的建设项目；  （二）跨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的建设项目；  （三）国务院审批的或者国务院授权有关部门审批的建设项目。  前款规定以外的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环境影响登记表的审批权限，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  建设项目造成跨行政区域环境影响，有关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对环境影响评价结论有争议的，其环境影响报告书或者环境影响报告表由共同上一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审批。  **第十二条**　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环境影响登记表经批准后，建设项目的性质、规模、地点或者采用的生产工艺发生重大变化的，建设单位应当重新报批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环境影响登记表。  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环境影响登记表自批准之日起满５年，建设项目方开工建设的，其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环境影响登记表应当报原审批机关重新审核。原审批机关应当自收到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环境影响登记表之日起１０日内，将审核意见书面通知建设单位；逾期未通知的，视为审核同意。  **第十三条**　国家对从事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工作的单位实行资格审查制度。  从事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工作的单位，必须取得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颁发的资格证书，按照资格证书规定的等级和范围，从事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工作，并对评价结论负责。  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对已经颁发资格证书的从事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工作的单位名单，应当定期予以公布。具体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制定。  从事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工作的单位，必须严格执行国家规定的收费标准。  **第十四条**　建设单位可以采取公开招标的方式，选择从事环境影响评价工作的单位，对建设项目进行环境影响评价。  任何行政机关不得为建设单位指定从事环境影响评价工作的单位，进行环境影响评价。  **第十五条**　建设单位编制环境影响报告书，应当依照有关法律规定，征求建设项目所在地有关单位和居民的意见。  **第三章　环境保护设施建设**  **第十六条**　建设项目需要配套建设的环境保护设施，必须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产使用。  **第十七条**　建设项目的初步设计，应当按照环境保护设计规范的要求，编制环境保护篇章，并依据经批准的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或者环境影响报告表，在环境保护篇章中落实防治环境污染和生态破坏的措施以及环境保护设施投资概算。  **第十八条**　建设项目的主体工程完工后，需要进行试生产的，其配套建设的环境保护设施必须与主体工程同时投入试运行。  **第十九条**　建设项目试生产期间，建设单位应当对环境保护设施运行情况和建设项目对环境的影响进行监测。  **第二十条**　建设项目竣工后，建设单位应当向审批该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环境影响登记表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申请该建设项目需要配套建设的环境保护设施竣工验收。  环境保护设施竣工验收，应当与主体工程竣工验收同时进行。需要进行试生产的建设项目，建设单位应当自建设项目投入试生产之日起３个月内，向审批该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环境影响登记表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申请该建设项目需要配套建设的环境保护设施竣工验收。  **第二十一条**　分期建设、分期投入生产或者使用的建设项目，其相应的环境保护设施应当分期验收。  **第二十二条**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环境保护设施竣工验收申请之日起３０日内，完成验收。  **第二十三条**　建设项目需要配套建设的环境保护设施经验收合格，该建设项目方可正式投入生产或者使用。  **第四章　法律责任**  **第二十四条**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负责审批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环境影响登记表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补办手续；逾期不补办手续，擅自开工建设的，责令停止建设，可以处１０万元以下的罚款：  （一）未报批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环境影响登记表的；  （二）建设项目的性质、规模、地点或者采用的生产工艺发生重大变化，未重新报批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环境影响登记表的；  （三）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环境影响登记表自批准之日起满５年，建设项目方开工建设，其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环境影响登记表未报原审批机关重新审核的。  **第二十五条**　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环境影响登记表未经批准或者未经原审批机关重新审核同意，擅自开工建设的，由负责审批该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环境影响登记表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建设，限期恢复原状，可以处１０万元以下的罚款。  **第二十六条**　违反本条例规定，试生产建设项目配套建设的环境保护设施未与主体工程同时投入试运行的，由审批该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环境影响登记表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责令停止试生产，可以处５万元以下的罚款。  **第二十七条**　违反本条例规定，建设项目投入试生产超过３个月，建设单位未申请环境保护设施竣工验收的，由审批该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环境影响登记表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办理环境保护设施竣工验收手续；逾期未办理的，责令停止试生产，可以处５万元以下的罚款。  **第二十八条**　违反本条例规定，建设项目需要配套建设的环境保护设施未建成、未经验收或者经验收不合格，主体工程正式投入生产或者使用的，由审批该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或者环境影响登记表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生产或者使用，可以处１０万元以下的罚款。  **第二十九条**　从事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工作的单位，在环境影响评价工作中弄虚作假的，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吊销资格证书，并处所收费用１倍以上３倍以下的罚款。  **第三十条**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的工作人员徇私舞弊、滥用职权、玩忽职守，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第五章　附 则**  **第三十一条**　流域开发、开发区建设、城市新区建设和旧区改建等区域性开发，编制建设规划时，应当进行环境影响评价。具体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另行规定。  **第三十二条**　海洋石油勘探开发建设项目的环境保护管理，按照国务院关于海洋石油勘探开发环境保护管理的规定执行。  **第三十三条**　军事设施建设项目的环境保护管理，按照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执行。  **第三十四条**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